

「구미 선도기업 월드클래스 육성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2026년 8월 24일
2. 제 출 자: 구 미 시 장
3. 회부일자: 2026년 8월 25일
4. 상정일자: 2026년 9월 2일

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II.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 설명자: 경제국장 김 영 철
2. 제안이유

가. 구미 선도기업 월드클래스 육성 지원사업은 성장주도형 선도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임.

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구미 선도기업 월드클래스 육성 지원사업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1) 추진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17조

나)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다) 「구미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8조

라)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2) 필요성: 기업 발굴, 선정, 사업관리, 컨설팅, 상담 등을 위해 축적된 기업지원사업의 경험과 기업·전문가 네트워크가 있고, 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에 위탁 필요

다. 위탁 사무 내용: 구미 선도기업 월드클래스 육성 지원사업 업무 전반

- 1) 사업세부계획 수립 및 선정평가위원회 구성·평가, 선도기업 선정
- 2) 과제 추진현황 수시 점검, 기업 애로사항 해결지원 및 연계지원 발굴·매칭
- 3) 기업 컨설팅 실시, 수행기업 결과 평가 등

라. 위탁시설(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해당없음

마. 위탁기간: 2027. 2.~12.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00백만원(시비)

(단위: 백만원)

| 계   | 사업비 | 간접비 | 인건비 | 비고 |
|-----|-----|-----|-----|----|
| 600 | 420 | 60  | 120 |    |

사.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

※ 2026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26.8.18.)

아. 위탁구분: 재계약 (수탁기관: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자. 부서 의견: 기업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구미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8조,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나. 예산조치: 2027년도 예산편성 예정
- 다.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 ※ 2026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라.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 감사결과: 안전 참조

### Ⅲ.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임 호 규

#### ○ 본 동의안은

- 성장주도형 선도기업을 발굴·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선도할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 ○ 검토 결과,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관내 제조 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그간 축적된 지원 노하우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금번 사업은 허리기업을 졸업한 기업을 연계하는 '브릿지기업1) 지원'이 신설되고, 사업예산이 전년 대비 2배 증액(3→6억원)된 만큼, 지원금 상향 및 맞춤형 전략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기업의 연구개발(R&D) 고도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질적인 밀착 관리가 요구됨.

---

1) 허리기업 졸업기업 중 성장성·혁신성 우수기업

-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전년도 추진 실적과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업들이 실질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V. 토      론      요      지: 생      략

VI.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VII. 심      사      결      과: 원안가결